

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専門委員 檢討報告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2005년 8월 26일

회부일자 : 2005년 8월 29일

제안 이유

지방공사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, 성과급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및 성과급 등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을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도록 함(안 제8조제3항 제4항)

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.
(안 제8조제5항)

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.
(안 제8조제6항)

검토 의견

-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정복의 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
- 지방공사의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사장이 임기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,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사전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중앙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, 동법 제63조의3에서는 지방공사 임·직원의 보수는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 뿐만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의 설립과 연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보완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關 聯 法 規

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)

第13條의4 (社長候補推薦의 節次) ①推薦委員會는 企業經營 및 당해投資機關의 業務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하고 最高經營者의 能力を 갖춘 者를 社長候補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推薦委員會는 社長候補를 선정함에 있어서 理事會에서 정한 契約案에 대하여 社長候補로 추천될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推薦委員會는 協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契約條件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案에는 社長이 任期중 달성하여야 할 經營目標 · 成果給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社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案을 정하는 理事會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推薦委員會의 委員長인 非常任理事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.

⑤推薦委員會는 제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候補와 協議한 契約案에 대하여 主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지방공기업법)

第58條 (任員)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한다. 다만,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社長을 任命할 때는 社長推薦委員會에서 推薦된 者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.

제63조의3 (임·직원의 보수) 공사의 임·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